

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. 4. 10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1. 4. 10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8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(2001. 4. 20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회계과장 양희준)

가. 제안이유

- 경기도 회계133330-11603(2000. 8. 16)호로 시행된 물품관리조례 개정표준안에 의거 부천시물품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현행 물품취득가격이 10백만원 미만(경기도 및 도내 시·군)과 물품취득가격이 10백만원 이상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)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구분없이 물품 취득가격이 20백만원 이상으로 조정함(안 제16조제3항)
- 불용품 매각처분시 물품감정기준을 현행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10백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20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조정함(안 제17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458호
의결년월일	2001. 4. 24 (제86회)

제출년월일 : 2001. 4. 10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- 경기도 회계133330-11603(2000. 8. 16)호로 시행된 물품관리조례 개정표준안에 의거 부천시물품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함

주요골자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현행 물품취득가격이 10백만원 미만(경기도 및 도내 시·군)과 물품취득가격이 10백만원 이상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)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구분없이 물품 취득가격이 20백만원 이상으로 조정함(안 제16조제3항)
- 불용품 매각처분시 물품감정기준을 현행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10백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20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조정함(안 제17조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단가 20백만원 이상인 경우

제17조제4항 중 “1천만원 이상”을 “2천만원 이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 및 ② (생략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경기도(시·군 포함)와 정부 각 부처, 특별시, 광역시, 타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(장부가격기준)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</p> <p>2. 경기도(시·군 포함)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기준)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</p>	<p>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 및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취득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단가 20백만원 이상인 경우</p>
<p>제17조(불용품의 매각) ①~③(생략)</p> <p>④불용품의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(이하 “감정기관”이라 한다)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.</p>	<p>제17조(불용품의 매각) ①~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..... 2천만원 이상..... </p>